

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이정희 의원 외 1인

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5. . . .

발 의 자: 이정희·정지원 의원(2인)

찬 성 자: 김낙관·김민성·김영태·김정도
박세채·장세구 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최근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산, 조산 등 임신 관련 건강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밀한 산전 진료와 검사가 요구되고 있어 35세 이상 임신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하며,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 및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관련 사업은 운영 실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모자·부자보건사업(안 제3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, 제11조

2) 「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부서검토: 건강증진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
4.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
5.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모자·부자보건사업) 구미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성·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·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사업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<u>난임 극복 지원사업</u></p> <p><신설></p> <p>5. ~ 12. (생략)</p>	<p>제3조(모자·부자보건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</u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</u></p> <p>5. <u>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</u></p> <p>6. ~ 13. (현행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「모자보건법」

제10조의5(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, 불안 등 심리적 증상(이하 “산전·산후우울증”이라 한다)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
2.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·산후우울증 관련 상담·교육
3. 산전·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
4. 그 밖에 산전·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, 유산·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. 이 경우 「한의학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(이하 “한방난임치료”라 한다)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
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유산·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유산·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

2. 유산·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

3. 그 밖에 유산·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「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

5. ~ 15. (생략)

② 도지사는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신청, 지원,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건강증진과

조 례 명	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, 제11조▪ 「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모자·부자보건사업(안 제3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제1호 : (당초)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사업 (변경)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▪ 제4호 : (당초) 난임 극복 지원사업 (변경)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▪ 제5호(신설) :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지원사업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고위험 임신율이 높은 35세 이상 임신부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신부의 정신건강지원 및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관련 사업의 명칭 정비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 : 35세 이상 임신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, 아울러 사업 운영 실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첨부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	

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가.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- 나. 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 사업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 - 지원 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
 - 지원 대상 :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(출산예정일 기준) 이상 산모
 - 지원 내용 : 외래 진료비, 검사비 지원(산부인과 포함 임신관련 진료)
- 나. 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 사업(*고향사랑기금 공모)
 - 지원 금액 : 난임부부당 20만원(생애 1회)
 - 지원 대상 : 난임시술비 신청부부
 - 지원 내용 : 문화생활, 심리상담에 사용가능한 구미사랑상품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 (a)	○ 35세 이상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	○ 35세 이상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세출	○ 난임극복	10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340,000
	소계(b)	400,000	360,000	360,000	360,000	360,000	1,840,000
□ 총 비용(a-b)		250,000	210,000	210,000	210,000	210,000	1,09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도 비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시 비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기타(고향사랑기금)	10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340,000
합 계	400,000	360,000	360,000	360,000	360,000	1,840,000

5. 부대의견

- 가. 고령임신의 경우 기형아 출산 등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아져 진료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상황임
- 나.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 조성에 기여
- 다. 난임부부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지지

6. 작성자

-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하양원(☎480-407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가.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
(단위: 천원)

추정 인원 ¹⁾	연도별 예산 추계				
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35세이상 산모					
6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

1) 출생아 2,000명 기준(구미시 2024년 출생아 2,014명) × 35세이상 산모비율 30%(구미시 2023년 35세이상 산모 비율 30%, 점차 증가추세임)

구분	2021년			2022년			2023년		
	출산모 (A)	35세 이상 모(B)	비율 (B/A)	출산모 (A)	35세 이상 모(B)	비율 (B/A)	출산모 (A)	35세 이상 모(B)	비율 (B/A)
출생아	2,409	639	26.5%	2,201	631	28.6%	1,861	558	29.9%

나.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사업

구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추정인원	500명	300명	300명	300명	300명
사업비	10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

* 신규 추정 난임 인원 300명 내외

- 구미시 난임 지원실적

구분	지원 인원	시술 건수	임신 건수	임신 성공률
2024년	580명	1,560건	362건	23%
2025. 7월말	420명	927건	185건	19%